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24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이해민·김재원·김준형

서왕진 · 황운하 · 김선민

정춘생 · 차규근 · 신장식

강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현행 「계엄법」상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음.

이에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또한 계엄 시에도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명시하되,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현행범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

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계엄권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방지하고, 비상시국에서 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회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7 신설 등).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계엄 효력의 상실) 제2조제5항에 따른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계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디지털 기본권 보장) ① 계엄 시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은 보장된다.

② 다만,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 가능하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구금되지 아니한다."를 "구금되지 아니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⑤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국무회의</u>	국회 재적
<u>의 심의를 거쳐야</u> 한다. <u><단서</u>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
<u>신설></u>	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u>다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u>
	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조의2(계엄 효력의 상실) 제2
	조제5항에 따른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계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u><신 설></u>	제9조의7(디지털 기본권 보장) ①
	계엄 시에도 인터넷 접속과 디
	지털 통신의 기본권은 보장된
	<u>다.</u>
	② 다만, 군사작전 수행에 직접
	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
	<u>가능하다.</u>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 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구금되지 아니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위반을 이유로 한 현행범으로 체포, 구 금되지 아니한다.